

테라·루나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적용 가능할까?



정 변호사의  
현장일지 (19)



정  
재  
욱

가  
사  
이  
표

『학력사항』

- 경북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최우등)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
-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노동법)

『경력사항』

-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 한국청년변호사회 상임대표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법 커뮤니티위원장
- (사)블록체인법학회 발기인, 학술이사
- 주간조선, 이데일리, 매일경제, 뉴스토마토 외부필진으로 활동 중



<한국산 가상화폐인 루나·테라 코인 피해자들을 대리해 지난 5월 19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가운데)가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번 테라·루나 사태가 이렇게 커진 이유 중 하나는 앵커프로토콜을 통한 연 20% 이자 지급이다. 테라 측은 스테이블코인인 테라 USD(UST)의 수요, 루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앵커프로토콜을 활용한 UST 예치, 이자 지급을 진행했다. UST를 앵커프로토콜 전용지갑으로 전송한 뒤 예치를 하면, 연 약 20%의 이자가 UST로 지급되는 구조다. 보유 루나를 담보로 UST를 빌릴 수도 있는데, 빌릴 때의 이자는 약 12~13%였다. 빌릴 때의 이자는 12%인데, 맡길 때의 이자는 20%이니 8%만큼의 이자를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루나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루나의 담보가치도 높아지니 잘만 찌다면 거의 무한에 가까운 대출, 예치를 반복하는 것도 가능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예치 물량보다 대출 물량이 더 많다면 한시적으로 버틸 수 있고, 담보로 받은 루나를 스테이킹하여 수익을 수취할 수 있으니 루나의 가격이 장기적으

로 우상향한다면 아슬아슬하지만 위와 같은 역마진 구조가 잠시나마 유지될 수도 있다.

### 1. 사기는 될 수 있지만 유사수신은 되기 어려운 이유

하지만 UST가 1달러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루나의 가격 또한 우하향한다면 어떨까. 루나를 담보로 한 역마진 구조 설계는 루나의 가치가 유지되고 올라간다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지만, 루나의 가치가 유지되지 못하고 하락한다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현실이 되었다.

암호화폐와 디파이(DeFi) 인프라의 대량 채택을 통해 전통적인 은행을 대체하겠다는 테라 측의 야심은 소수의 역만장자와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그런데 은행을 대체한다?

사실 은행을 대체한다는 사업구조는 법상 금지된다. 은행법·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테라나 앵커프로토콜 측이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 따라서 얼핏 생각하면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하여서도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실제 일각에서는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하여 위 앵커프로토콜 연 20% 이자 지급을 지적하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편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테라·루나 사태를 사기죄로 의율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나,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현행법상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출자금을 받으면서 원금을 보장해준다거나, 예금이나 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으면서 원금 또는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면서 사채 가격이 떨어지면 발행가액으로 재매입해주겠다고 하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원금 또는 이자 보장 약정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수취하면 유사수신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

앵커프로토콜을 이용한 UST 예치도, UST의 가치가 1달러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약 20%의 이자를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금 및 원금초과금액(이자)을 약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이번 테라·루나 사태에 대해서도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적용해볼 여지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은 자금의 조달, 즉 금전의 수취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2조에서 정한 명목으로 출자금을 받는 행위, 금전을 받는 행위,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출자금 수령행위, 사채 발행행위 또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국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받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만약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이 아닌 것’을 받았다면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UST가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금·이자 보장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

금전이 무엇인지 여러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금전이라 함은 유통되는 화폐, 즉 통화를 의미한다. 우리 대법원도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763조, 제394조에서 ‘금전’의 의미는 우리나라에서의 통화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13760 판결).

UST와 같은 가상자산은 통화(유통되는 화폐)라 보기 어렵다. 정부에서도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법원에서도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은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2021카불668 결정).

## 2. UST 같은 가상화폐는 금전인가?

현재 법령의 구조, 민법의 금전에 대한 해석과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한 사법부·행정부의 입장과 시각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상자산이 금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UST로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현행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 규제의 공백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제의 공백으로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규율이 가능하다.

원금 또는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약속하며 금전(원화)을 받는 경우, 예컨대 “세계 1억원을 맡기면 가상자산을 잘 굴려서 1년 뒤 2억 원으로 돌려 드립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현행법을 적용할 수 있다. “세계 1비트코인 맡기면 1년 내 2비트코인으로 돌려 드립니다”라

거나 “세계 1비트코인을 맡기면 1년 내 200% 수익을 보장드립니다” 같은 경우는 금전을 수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유사수신행위로 규율하기는 어렵고 사기로 규율할 수밖에 없다.

테라 사태 수사 시기나 피해회복 관점에서 보면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될 경우, 수신금액 전체에 대해 범죄수익금보전이 가능하다. 반면 사기의 경우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피해금에 대해서만 범죄수익금보전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초기에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이자가 지급되므로, 외관상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라 생각하기 쉽지 않다. 결국 유사수신행위법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나서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을 수취하는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예외요건으로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수탁하는 것 등은 제외하여 규제와 현실의 조화를 동시에 모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주간조선)